

#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907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3. 5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2024년 12월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을 기수립 하였으나
- 「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」 결정·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 및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“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(안)”을 재수립하고자 함.

## 2. 관계법령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75조의2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70조의13

## 3. 주요내용

- 수립개요
  - 대상지역 : 남양주시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(비시가화지역)
  - 면 적 : A=77.20km<sup>2</sup> [기수립 대비 (증) A=0.06km<sup>2</sup>]
  - 정비유형 : 일반형, 주거형, 산업형, 자연형 (단위 : km<sup>2</sup>)

구 분	총 계		일반형		유도형				자연형	
	당초	변경	당초	변경	주거형		산업형		당초	변경
					당초	변경	당초	변경		
합 계	77.14	77.20	13.17	12.81	15.28	15.51	12.78	13.84	35.91	35.04

○ 추진경위

- '22. 10. :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
- '24. 12. :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고시
- ※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(기준경사도 및 기준지반고 완화) 반영
- '25. 12. : 「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」 결정 고시
- '26. 01. :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입안
- '26. 02. : 주민공람·공고[총 27건]
- ※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중

○ 향후추진계획

- '26. 3. : 주민의견서 검토회신
- '26. 3. : 시의회 의견청취
- '26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'26. 4. : 성장관리계획 (변경)결정 및 고시(2차)